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1. 21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8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8년 8월 25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8. 9. 2)

상정, 심사, 보류

제140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위원회 (2008. 11. 21)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김 종 철

가.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 및 자체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함

나. 주요 개정 내용

1) 감사담당관의 분장 사무는 감사(민원)조사·고객만족·환경순찰 업무 등으로 한다.(안 제3조)

2) “행정관리국에 총무과·홍보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전산정보과·민원여권과를 둔다”로 하고, “다만, 신청사 추진반은 한시기구로 한다”를 삭제 하며, 부칙에 존속기한을 2008.12.31까지로 한다(안 제4조)

- 소관사무중 “고객만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

3)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지역경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로 한다.(안 제5조)

- 소관사무중 “전산 및 지역정보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 한다.

4)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환경과를 둔다.”로 한다.(안 제6조)

- 소관사무중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중화장실의 설치·시설유지 및 관리(공원내 공중 화장실 제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아래사무를 신설한다.

-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 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 “도시관리국에 주택과·도시계획과·건축과·도시디자인과·지적과·공원녹지과를 둔다.”로 한다.(안 제7조)

- 소관사무중 아래 사무를 삭제한다.

- 환경보전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 물 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측정에 관한 사항
-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 소음·진동·악취 및 기타 환경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공해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보건소장의 업무에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를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 및 식품위생·공중위생·위생업소 감시업무·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수행한다”로 변경한다.
(안 제11조)

7) 식품안전추진반을 신설하여 한시기구로 운영하며, 부칙에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10.12.31까지로 한다.(안 제11조의2)

8) 기구재설계에 따른 관련조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개정방식으로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5.1) 및 2008년 5월부터 추진한 자체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구의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고자 제출된 것임.

<주요 개정내용>

○ 안 제3조에서는 민원봉사과 고객만족 업무를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기획재정국 소속이던 전산정보과를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변경하였으며, 민원봉사과와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통합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녹지환경과의 환경관리팀, 맑은마포추진팀과 청소행정과의 지정폐기물팀을 이관하여 주민생활국에 환경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도시관리국 소속의 녹지환경과는 새로 신설될 환경과로 환경업무를 이관하고, 공원팀, 조경팀, 자연생태팀의 업무를 관장할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보건소장의 업무에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단속 등을 추가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안 제11조의 2에 식품안전추진반을 보건소에 신설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폐합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조직과 기능을 정예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행정기구나 정원을 효율적으로 개편·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용역업체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후 그 진단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동 건은 2007년 5월에 기구정원조직진단 용역 방침에 의거 2007년도 추경예산에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자체 조직진단 추진계획을 세워 2008.5.1~7.10까지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동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용역업체에 정밀 조직진단용역을 의뢰하지않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함으로써 부서

별로 기능과 업무량, 분장사무 등이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되었고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나,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는 조속히 심사할 필요성도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